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7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정정 사유

- 투자대상 모펀드 및 투자한도 변경

- 투자대상 변경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경(삼성스트라이크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및 위탁운용역 변경(강동욱, 심주현 운용역 → 강동욱 운용역) 등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신탁 명칭		삼성스트라이크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		-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업무수탁사 운용전문인력] 국내 운용전문인력 심주현 - 과거 운용경력: 2023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 1본부 운용2팀		[업무수탁사 운용전문인력] 국내 운용전문인력 (삭 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추 가)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6.7.30		투자대상 모펀드 및 투자한도 변경, 투자대상 변경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경(삼성스트라이크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 삼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투자신탁 제2호[주식] 및 위탁운용역 변경(강동욱, 심주현 운용역 → 강동욱 운용역)
4. 집합투자업자	[업무의 위탁] (1)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업무의 위탁] (1)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삭 제)
5. 운용전문인력	[업무수탁사 운용전문인력] 국내 운용전문인력 심주현 과거 운용경력 - 2023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1본부 운용2팀 - 2021 삼성액티브자산운용 Growth본부 운용1팀 - 2018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업무수탁사 운용전문인력] 국내 운용전문인력 (삭 제)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삭 제)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생 략) 다. 모자형 구조 (생 략)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그림 업데이트) 다. 모자형 구조 (그림 업데이트)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 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1)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 합산하여 60% 이상) 3),4) (생 략)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1)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식(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0이하로 하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여야 함.	가. 투자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1)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60% 이상) (삭 제) 2),3) (현행과 같음)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식(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0이하로 하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여야 함.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 2)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나. 투자 제한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1)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table><tr><th>구분</th><th>투자제한의 내용</th></tr><tr><td>동일종목투자</td><td>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td></tr></table>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삭 제) 나. 투자 제한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table><tr><th>구분</th><th>투자제한의 내용</th></tr><tr><td>동일종목투자</td><td>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파생결합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td></tr></table>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파생결합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파생결합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삭 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__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삭 제)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__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 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원화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삼성스트라이크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원화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수탁사 및 업무 위탁 범위] (삭 제)	